

■ 치과 칼럼

임플란트 (1)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치료법인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자리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나사를 뿌리 삼아 인공치아를 심는 원리로 하는 치과 치료 분야입니다.



를 심고, 이때 필요에 따라 뼈 이식을 먼저 시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 치근이 잇몸 뼈와 단단히 고정된 후 (약 6개월후) 임플란트 크라운을 씌우며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입니다.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세정제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 없이 플라그가 쌓이고 이것으로 인해 치주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어 최악의 상황엔 임플란트를 빼야 하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아의 잇몸이 붓는다는지, 양치 시 피가 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 클리닝과 그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임플란트 크라운을 씌운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잇몸 질환이 생긴 후 내원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는 임상 경험이 충분한 의사의 시술과 시술 후의 환자의 주의, 그리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의 주기적인 관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자연 치아에 버금가는 만족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엔 임플란트의 종류와 뼈 이식 및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도입되기 전에는 브리지, 또는 부분 아니면 완전 틀니로 상실된 치아 부위를 대체했었습니다. 그러나 틀니는 잇몸에 대한 완벽한 고정이 불가능하여 씹는 기능의 60 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치아 뿌리의 적절한 자극이 없어서 잇몸 뼈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틀니가 헐거워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틀니에 비해 고정이 되고 심미적으로 다른 치아와 잘 어울리는 브리지는 여전히 임플란트의 최고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지 크라운을 양 옆으로 걸기 위해 멸절된 자연 치아를 깎아내야 하고 이로 인해 그 치아들이 시리거나 통증을 유발시켜 신경 치료까지 하게 되고, 크라운의 수명 기간으로 인해 그 수명이 임플란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료법으로 뿌리 모양의 티타늄 나사를 잇몸 뼈에 심어서 브리지와 비교되지 않는 단단한 고정력으로 자연 치아의 기능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내는 시술입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고, 시술 연령은 성장이 끝난 18세에서 80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최대 성공 요인인 잇몸 뼈의 양과 질이 좋아야 함에 따라 잇몸 뼈 이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과정은 크게 두 번의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x ray 와 ct scan으로 잇몸 뼈의 형태와 식립 부위 주변 혈관과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특수 표면 처리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fixture)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시민권자와의 결혼: K-1 비자? K-3 비자? 아니면 가족 초청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또는 다른 외국) 국적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미국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는 배우자의 미국에서의 '신분'에 관한 절차일 것입니다. 다음 각각 다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비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민권자 A 군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한국지점에서 3년 간 근무하면서 한국인 B 양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3년의 예정된 근무 시간이 끝나감에 따라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A 군은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B 양 역시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어서 B 양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B 양의 미국에서의 거주를 위한 비자 진행을 수월하게 하려면 어디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낫고 어떤 비자를 통하는게 나을까요?

우선 미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다면, B 양은 K-1 이라는 fiancé(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관광비자 B-2 로 들어가 결혼을 하는 옵션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광이라는 입국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신분 변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무비자로 들어가 90 일 내에 결혼을 해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뀐 90day rule(교차로 1/22/2018 칼럼 참조)에 의해 이 방법도 불가능해졌습니다. K-1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과거 2년 동안에 서로 만난 일이 있으며 진정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K-1 비자로 입국 후, 그 미국시민과의 결혼이 90 일 이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

우에는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별 문제 없이 90 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I-130 (가족초청)과 I-485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이민국에 제출, B 양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약간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결혼을 한 후 혼자 미국에 들어간 A 군이 우선 배우자 초청을 위해 I-130 이라는 form을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I-130 이 승인이 나면 B 양은 그 승인 notice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바로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130이 승인 나는 동안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I-130을 제출했다는 증빙으로 A 군이 K-3라는 (기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3 비자의 승인 기간이 I-130 보다 짧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신청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I-130의 승인 기간이 더 짧거나 비슷해서 굳이 K-3 비자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Immediate Relative를 통한 신분 변경이기 때문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혹시 결혼 이전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거나 불법으로 일한 기록에 대해서도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혜택으로 인해 미국 이민법과 대사관에서는 그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비자이므로 반드시 이민변호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